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광장동실내배드민턴장운영내규

제정 2016.11.18.

개정 2022.11.24.

개정 2023.04.05.

제1조(목적) 운영내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이하 “배드민턴장” 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회원들과 배드민턴장 운영에 관한사항을 운영내규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배드민턴장의 모든 운영 및 내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본 규정은 공단 공공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배드민턴장 운영내규는 공단의 배드민턴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이용회원에게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운영내규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운영내규는 배드민턴장에서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 공단홈페이지 게재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배드민턴장의 운영방침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운영내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운영내규는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배드민턴장 이용을 위하여 등록한 회원은 운영내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이용회원의 성립) ①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배드민턴장이 정한 신청서로 이용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②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본 운영내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배드민턴장의 의무) 배드민턴장 운영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배드민턴장 이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배드민턴장 이용일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게시의 의무) 배드민턴장은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각호와 같이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② 프로그램신설 및 증설

③ 프로그램 이용료

④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주의사항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배드민턴장 이용을 위해 배드민턴장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배드민턴장 내 체육시설물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③ 회원은 운영 내규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도자 또는 직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 ④ 회원은 이용요금의 할인대상자 확인 관계상 배드민턴장 관계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 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를 지닌다.
- ⑤ 회원은 배드민턴장 출입 시 회원카드 (입장권)를 제시하고 출입 단말기에 본인확인 처리해야 한다.
- ⑥ 모든 회원은 이용요금을 사용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 ⑦ 모든 회원은 일일 1회 입장을 원칙으로하며, 재 입장 시에는 일일 입장권 등을 재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허가) ① 배드민턴장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서식(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1일 입장권과 월 강습 수강권으로 구분하고,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이용시설, 이용기간, 이용금액, 나이별 이용구분, 발행일, 발행기관장의 명칭 등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 카드의 형태와 재질은 지정된 전산운영시스템·도안과 업무 처리 특성에 따르고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9조(운영시간) 광장동실내배드민턴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단,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시 설 명	월요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설·추석 명절연휴	비고
광 장 동 실 내 배 드 민 턴 장	06:00-22:00	06:00-20:00	09:00-18:00	

제10조(휴관일) 배드민턴장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분적으로 휴관할 수 있다.

- ① 정기휴관일 : 매월 첫째 일요일, 설·추석 명절 당일
- ② 삭제
- ③ 배드민턴장의 보수공사 등으로 부득이 휴관하여야 할 경우
- ④ 업장점검 및 시설점검 등 운영상 부분적으로 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제11조(이용구분 및 자격) ① 배드민턴장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에 관한 제한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② 일일입장권 발권 및 월강좌수강권을 등록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 ③ 오전(06:00~12:00) 및 오후(19:00~22:00)에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입장할 때에는 부모와 같이 입장하여야 하며 장내의 어린이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이용료 및 할인) 배드민턴장의 이용료는 서울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2)을 따른다. 단, 신규개설강좌의 경우 이사장의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받았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적용한다.

②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64조에 의거하여,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회원만 회원 자격이 유지됨에 따라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회원가입 후 매 2년마다 재동의 절차를 이행해야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회원 재동의)

④ 신규회원 가입 시, 동의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자동연장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면 2년 단위로 개인정보가 자동연장 되어 추가 재동의 절차 없이 배드민턴장 이용이 가능하다.

1. 회원 재동의 기간 : 회원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홈페이지 로그인시 3개월 전부터 공지(만료일 이후 회원 탈퇴 처리)

2. 재동의 방법 : 배드민턴장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단 개인정보보호 운영 및 관리 방침 및 이용규정 33조 근거하여 광진구시설관리공단 3개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이용 회원 중 최근 5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회원은 삭제 처리한다.

제14조(회원가입자격) 배드민턴장 회원은 일일입장권 발권, 혹은 월 정기권등록을 행한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① 월 정기권 등록은 일반회원과 동호회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이용자

2. 동호회회원 : 30명 이상 등록을 행한 배드민턴 단체

② 개인강습 가입은 일일입장권 발권 및 월정기권등록을 행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③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자격제한) 배드민턴장은 회원 신청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 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②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배드민턴장이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③ 배드민턴장의 제규정(이용약관,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강습질서 문란, 배타적 회원 화합등 체육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④ 이용요금(대관료, 각종 이용요금...등)을 2회 이상 연체 및 미납 하는 경우
- ⑤ 각종 부정행위 및 도강행위를 할 경우
- ⑥ 배드민턴장내·외(주차장, 휴게공간, 정원 등)에서 허가받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강습, 판매, 영업알선, 도박, 음주, 취사, 음식물 섭취...등)
- ⑦ 기타 배드민턴장 운영 및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6조(회원등록절차)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확인절차를 거친 후 회원증을 발급한다.

- ①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② 신분증(주소가 서울특별시로 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단, 중고생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인 경우 학생증으로 가능하다.
- ③ 초등학생 이하의 자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계가족을 동반하여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회원증을 발급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본인과 회원증 발급자의 이름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직계가족 신분증

④ 신규회원 (모바일회원 포함)은 카드발급 시 무료로 한다.

제 17조(회원증 재발급) ①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회원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 신분증(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②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분실신고 후 즉시 재발급 한다.
 - ③ 분실 접수는 전화로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단 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는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카드 발급자의 이름이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직계가족이 방문하는 경우 가능하다.
 - ④ 회원증 재발급 비용은 공단 방침을 따른다.

제 18조(회원책임) ① 월정기권 및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② 회원은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에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③ 회원이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④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19조(회원의 이용해제) 배드민턴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사항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②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체육관의 프로그램 이용이 곤란한 경우
- ③ 기타 체육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④ 모집 후 정원에 크게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 할 경우
- ⑤ 각 호와 관련하여 환불은 공단의 환불 방침에 의거 환불하여 준다.

제20조(환불) 회원의 개인사유로 인한 환불신청은 서식(별지 제 3호 서식)을 작성, 제출 후 2주안에 공단의 환불 방침에 의거 환불하여 준다.

제21조(이용일의 연기) 이용일의 연기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에 가능하고, 서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강습프로그램 연기는 강습 개시 전에만 가능하며, 개시 후에는 환불하여야 한다.
- ② 월 회원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연기 할 수 있다.
- ③ 연기에 따른 이용기간은 연기를 희망한 월의 동일기간(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이용일의 연기는 월 1회에 한하며 연기 신청일로부터 최장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회원자격의 소멸) 회원이 배드민턴장으로부터 회비의 환불을 신청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소멸 된다.

제23조(사물함이용) ①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제출 후 이용할 수 있다.

- ② 사물함임대는 월 정기회원에 한하며 1인 1개 사물함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사물함 임대 이용료는 아래와 같다.

품 명	보 증 금	월 이용료	키분실요금	비 고
개인사물함	10,000원	5,000원	10,000원	

④ 보증금은 처음 임대 받을 때 선납하고 이용 종료 시 돌려받는다. 단, 사물함 임대 이용료 연체 시 보증금에서 이용료를 일할 계산 후 차감 할 수 있다.

⑤ 사물함 임대는 월 강좌 시점(월 1일, 주말일 경우 첫 평일)에 맞추어 임대하고 월정 기권 재등록자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열쇠를 분실 및 훼손한 회원은 원상 복귀가 불가능 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⑦ 사물함 임대료 연체 시 최장 40일까지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하고 이후로 최장 2개월 동안 별도 보관 후 폐기한다.

⑧ 사물함임대 중 사물함관리 및 책임은 임대자에게 있다.

⑨ 사물함 임대종료 후 반납 시 원상태로 복원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⑩ 사물함 이용 도중 회원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환불 시 사물함 환불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고 공단의 환불 규정에 의거 환불하여 준다.

제24조(월강좌접수) ① 강좌접수는 신규접수와 재등록접수를 나누어 실시한다.

- 1. 신규접수 : 매월 22일~말일(09:00~21:00)

- 2. 재 등 록 : 매월 15일~20일(접수처 및 무인발권기, 온라인 가능)
- ② 반 변경은 매월 21일로 하며, 강습 개시 후 변경할 수 없다.
- ③ 접수는 이용 전 달에 실시한다.

제25조(주차) ① 배드민턴장 이용자(일일입장권 발권자 또는 월정기권 등록자)에 한하여 3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단, 3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당 500원의 주차이용료를 징수한다.

- ② 이용자가 아닐 경우 10분 초과시 10분당 500원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26조(코트이용) ① 경기장 내 코트는 6면이며 이용자는 1게임 25점 단판게임으로 다음 대기인과 교대한다.

- ② 난타(게임이 아닌 셔틀콕을 서로 치는 행위)를 할 경우 20분 내외로 다음 대기인과 교대한다.
- ③ 대기인은 코트 안의 숫자에 맞춰 자신의 차례를 셔틀콕으로 표시한다.
- ④ 동호회와 일반인은 6면의 코트를 상황에 맞게 분배하여 이용한다.
- ⑤ 운영자는 특정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공지 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대관) ① 대관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서식(별지 제 8호 서식)을 작성 후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에 제출하고 사용 허가 후 대관요금을 지불한다.

- ② 대관준수사항 및 대관료는 공단 방침을 따른다.
- ③ 체육행사 외의 목적으로 대관 신청 시 운영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④ 대관료를 납부하고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 당일포함 7일전에 취소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대관 환불은 대관환불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 제출 후 사용 당일 포함 7일전에 통보 후 전액 환불 한다.

제28조(대관규칙) ① 대관행사 사용자는 이용 관련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사용승인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 ② 배드민턴장과 관련된 사항은 배드민턴장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배드민턴장 이용 시 지정된 실내화(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 ④ 계약된 대관 시간은 엄수해야 한다.
- ⑤ 계약된 대관 시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관신청 주관 단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 ⑥ 배드민턴장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⑦ 대관은 허가된 시설에만 적용되므로 일체의 집기나 운동용품은 배드민턴장의 사전 허락 후 사용한다.
- ⑧ 지정된 대관 시설 외에는 사전허가 없이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 ⑨ 이용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시설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
- ⑩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⑪ 대관사용 허가 신청서에 신청한 사용 목적 외 사용은 할 수 없다.
- ⑫ 기타 사항은 배드민턴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시설물 관련 사고처리) ① 배드민턴장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한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체육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① 강사의 안전의식 소홀로 인한 사고책임은 배드민턴장에게 있다(강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강사가 변상한다). 단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회원 간 운동 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사고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체육관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위반 시 발생하는 사고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31조(면책조항) ① 배드민턴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체육관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2조(책임사항) ①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면 체육관은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33조(이용약관 외 준칙) ①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례를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육관과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이용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법규에 의한다.

제34조(사용승인 정지·취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배드민턴장 사용승인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승인 신청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할 때

② 사용승인 신청시에 제출한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제35조(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출입제한구역) 배드민턴장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입제한 표지가 있는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제37조(이용 시 주의사항) ① 실내 음식물 반입 금지

② 실내 전용 운동화 착용 후 입장

- ③ 롤러스케이트, 유모차, 자전거 등 이동수단 반입금지
- ④ 배드민턴 운동 외 운동금지
- ⑤ 실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금지
- ⑥ 비품 및 기타 시설물 훼손 행위금지
- ⑦ 술을 마시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금지
- ⑧ 배드민턴장 내에는 금연시설이므로 흡연은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외곽 지정된 곳에서 가능
- ⑨ 종교의 선교활동을 하는 행위금지
- ⑩ 배드민턴장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매매 또는 선전하는 행위금지
- ⑪ 성희롱을 하는 행위금지
- ⑫ 위항의 각 호를 위반할 시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제38조(제재) ① 본 규정 제36조 각 호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본 규정 제21조 각호를 지나치게 위반한 이용자는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진구 관련 조례 및 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11. 24.〉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0조(운영시간)에 일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운영규정

제 정 2017.05.01.

개 정 2022.04.25.

개 정 2022.08.12.

개 정 2023.01.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체육시설(이하 “아차산체육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아차산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②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체육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공단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사용자”란 사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체육 공원내 유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강습료”란 생활 체육교실 등 개설 프로그램에 개인이나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권에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시설물”이라 함은 아차산체육시설 내 모든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4조(대관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대관 사용자가 해당 시설물을 체육산업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부대 설치 등 부수 행위를 포함한다. 단, 해당 시설물에 기 임차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행위는 제외한다.
2. “대관사용자”라 함은 수탁자가 정한 소정의 신청 절차를 이행한 후 대관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 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대관(사용) 허가”이라 함은 수탁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대관 시설사용을 신청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시설물 사용을 허락한 경우를 말한다.
4. “이용료”라 함은 대관시설의 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기본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등 대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5. “대관(사용) 승인”이라 함은 이용료를 신청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일 내에 납부

완료 후 대관 사용 신청 완료된 절차를 말한다.

6.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운영목표) 아차산체육시설의 운영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차산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 안정성 및 체육·문화의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한다.
2. 고객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와 자연친화적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의 장을 마련한다.
3.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과 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영효율 증진을 제고한다.

제6조(적용의 범위) 아차산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2. 기타시설(농구장, 야외헬스장, 육상트랙 등)
3. 부대시설(조명·전기시설, 음향시설, 휴게시설, 기계시설 등)

제7조(시설 사용시간 등) ①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은 06:00부터 23:00까지, 공원 내 기타 근린 체육시설은 년중 제한없이 개방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 또는 구의 공공 행사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일정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타, 광진구청이 아차산 체육시설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종 대관 행사 진행, 시설관리 등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직원 근무시간을 공단 복무 규정상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 시, 다음 날 휴무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 사정 또는 부득이한 경우 조정하여 휴무 또는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설개방 및 이용) ① 체육공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경기 및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보호, 안전상의 이유 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 장 운 영

제10조(운영기간 및 시간) ① 아차산체육시설의 운영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이며, 개방시간은 06:00시부터 23:00시 까지로(주간 06:00~18:00, 야간 18:00~23:00을 기본 대관 사용 시간으로 하되, 정기대관 사전 예약 시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은 07:00부터~, 테니스장, 정구장은 06:00부터~ 2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단,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요금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야간 시간은 공원 조례 제8조에 의거 동, 하절기 구분에 맞추어 적용하며, 운영 시간을 조정 할 경우 미리 알려야 한다.
2.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 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주간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4. 테니스장, 정구장의 단체전용 사용시간은 오후(06:00~14:00), 오후(14:00~22:00) 2회로 분할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1조(휴관) ① 휴관일은 매년 신정(1월1일), 명절 (설,추석) 당일로 하며 명절 당일 휴관을 제외한 연휴기간에는 09:00~18:00까지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0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예측 하지 못한 사유로 임시 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대관 등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 체육교실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은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나 협회에 가입한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체육행사 : 1호의 체육경기 외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경기장시설 종목) 행사

4. 기타행사 :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문화예술 행사, 대규모 대회 등

제13조(사용허가 순위) ① 2인 이상이 시설물 사용을 위해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1. 국가, 서울시 또는 광진구의 공공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 경기.행사

② 체육시설 일정 기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신청 등) 아차산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진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사용 허가의 취소와 제한) 아차산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하는 사항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광진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적용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광진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적용한다.

제3장 대 관

제17조(사용구분) 체육시설 사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나 협회에 가입한 경기 단체가 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체육행사 : 1호의 체육경기 외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목적(경기장시설 종목) 행사
4. 기타행사 : 제1호부터 제3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대규모 대회

제18조(대관의 종류) 체육시설 대관은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관료 산정방식에 따른 구분 (*상기 제17조와 동일)
2. 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 가. 정기대관은 체육행사에 한하여 일정 기간 내 공개모집을 통해 사전 일괄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을 말하며,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신청접수가 종료된 후 잔여 일정에 한하여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3. 대관신청 배정 순위에 따른 구분
 - 가. 우대배정은 시, 구에서 운영·지원하는 특화사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주관하는 행사, 기타 수탁기관의 운영·지원하는 등 우대배정 단체가 사용하는 대관을 말한다.
 - 나. 전용 사용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협회(가맹) 및 사전 단체(팀 등록)가입 승인된 단체가 사용하는 대관을 말한다.
 - 다.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신청접수가 종료된 후 잔여 일정에 한하여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제19조(대관신청 및 절차) ① 대관 신청은 시설별로 정해진 일정 기간은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운영한다.

구 분	사용시설	우대배정 (협회단체 등)	전용사용(정기대관)		일반사용 수시대관	비 고
			관내팀	관외팀		
평일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 전월 매월 10일까지 서면(공문) 접수	사용 전월 매월 20일 (09:00~)부터	사용 전월 매월 22일 (09:00~)부터	평일분(사용 전월) 매월 25일 (09:00~) 온라인 예약시스템	* 전용사용 장기대관 사 용자는 사전 승인 단 체로 가입된 사용자임 * 사용팀이 많을시 사용 횟수는 제한 조정 될 수 있음
	풋살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사용 전월 매월 20일 (09:00~)부터	사용 전월 매월 22일 (09:00~)부터		
토요일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 2개월전	사용 2개월전 매월 15일 (09:00~또는 20:00)/공개추첨	사용 2개월전 매월 15일 (10:00~또는 20:30)/공개추첨	사용 2개월전에는 예약 불가	* 사용팀이 많을 시 팀 등록을 일시간 제한하 여 실시(대기등락)
일요일 공휴일	풋살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매월 10일까지 서면(공문) 접수	사용 전월 매월 20일 (09:00~)부터	사용 전월 매월 22일 (09:00~)부터	평일분(사용 전월) 매월 25일 (09:00~) 온라인 예약시스템	

② 정기대관의 수시 대관사용 신청은 최소 사용일 3일 이전에 온라인 대관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예약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당일 예약은 이용자 또는 단체에서 사전에 예약 가능 여부 확인 후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04. 25.>

③ 대관 일정은 온라인 대관예약시스템을 이용하되, 필요 시 다른 매체에 공지할 수 있다.

④ 대관시설물을 사용 또는 사용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시스템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대관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 또는 대관 취소신청서(별지 서식 제2호)로 하여야 한다.

⑤ 대관 승인 후, 추가사용 또는 부대시설 비용 추가 신청은 대관시설 추가 신청서(별지 서식 제3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대관의 배정) ①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내 대관시설물의 정기대관 신청 전 서면 요청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체육행사는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본 규정 제13조 사용허가 사항 적용)

② 체육시설 일정 기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협회, 단체, 개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대관운영 기간은 매월 단위(매월 1일~말일까지), 신청 단위는 회당 기본 2시간 단위로 배정한다. 단, 일부 전용 사용, 체육 경기 행사 의 경우는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시접수 기간에는 1시간 단위도 가능하다.

④ 대관시설은 해당 종목경기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 경기대회, 공공행사 등 목적으로 단체대관 등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21조(배정제한) ① 공정한 사용 기회 제공을 위해 정기대관 (우선) 신청 시, 단체당 평일/휴일 포함한 주간 1회, 월간 3회 이내로 사용배정 횟수를 제한하며, 월별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배정 운영한다.

② 일반사용자의 할당 배정 제공을 위해 정기대관 신청 시, 체육 경기 1일 2시간, 체육 행사는 1일 4시간, 승인단체 시간 외 사용 제한 등 사용 시간을 제한하여 배정한다.
단, 우대배정, 전용 사용 단체의 사용 적용은 예외로 한다.

제22조(대관 우선순위) ① 2인 이상이 시설물 사용을 위해 다룰 때 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1. 국가, 서울시 또는 광진구의 공공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경기.행사
- ② 체육시설 일정기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전용사용 진흥단체 : 순위-(1) 체육경기 가맹(협회)단체 (2) 협력 지원 단체
(※다목적구장은 족구장을 변경한 시설로써 생활체육 단체 중 족구협회의 이용 신청시 타목적에 우선하여 대여하며, 테니스장 정구장은 종목별 협회 요청 시, 테니스장 2코트, 정구장 1코트를 타목적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2. 체육시설 정기 사용 승인단체 : 순위-(1) 관내 단체(팀) (2) 관외 단체(팀)

제23조(단체대관 구분)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정구장의 단체 사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대배정 단체 : 관리감독청 주최 교실 사업 및 수탁자의 사전 승인을 거친 교육청 산하 기관 단체, 관내 시설 운영 자원봉사 동호인 단체, 우수클럽 단체 등 배정 우선순위 대상 단체
2. 팀등록 단체 : 정기대관 사용권한 부여(온라인예약시스템 ID 1개 한정 권한 부여)

가. 관내팀 : 광진구 관내에 주소를 둔 회원을 축구20명, 풋살10명, 족구10명, 테니스 및 정구 20명 이상을 보유한 동호인 단체(팀)을 말한다.

나. 관외팀 : 광진구 관내에 사업장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둔 회원을 축구25명, 풋살10명, 족구8인, 테니스 및 정구 20명 이상을 보유한 동호인 단체(팀)을 말한다.

다. 일반사용 : 그 외 미등록 동호인 단체, 일반인 등 수시대관 사용자를 말한다.

제24조(단체대관 팀등록) ①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정구장의 정기대관 및 전용사용 이용자는 팀 등록 후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2. 이용자 약약서(별지 서식) 3. 팀 회칙 및 이에 갈음할 만한 서류
4. 팀 회원명부 5. 신분증 사본(단, 주민번호뒷번호 삭제) 6.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별지서식)

※ 신분증은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망, 거주지/신원 확인 가능한 증명 확인 서류 대체 가능

② 시설별 중복 가입 신청은 불가하며, 최초 가입 시 등록단체 카드 발급 운영하며, 유효 기간은 최초 가입 후 2년 이내로 하며, 매년 년초 팀 갱신 관리와 이용자 확인 점검을 수시 관리 운영한다.

③ 다수 등록가입 희망단체 신청 시, 동일시간 경쟁으로 주활동시간 그룹핑을 통해 우선 배정 제한과 대기등록(가허가) 기간을 두어 등록단체 가입현황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동시 예약팀이 충돌 시 관내단체 우선 순위로 배정한다.

④ 시설별 가입 시, 1인이 2개팀 중복 가입 또는 본의 동의없이 허위 인원 기재 등 허위 팀으로 간주하여 가입 등록을 취소한다.

⑤ 시설내 확약사항 적발, 무단 양도 및 전매, 신청목적 외 타용도 사용, 기타 실사용자가 상이한 단체에 대하여는 팀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5조(대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 내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관심의 내부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상임이사)을 포함한 5인(운영팀장 당연직)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심사위원 선임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동시시설 내부 실무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③ 대관심의 내부 실무위원회는 신청한 건에 대하여 대관 승인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단, 체육행사 심의 허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실시하며 대관 형태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대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고 1년간 보관하며, 사용자에게 대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대관승인) ①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관 사용자에게 조건을 부가하거나 협의를 통하여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② 대관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토록 하고 대관사용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시설대관허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호 확인 또는 그 결과를 통지 안내한다.

③ 시설대관 이용료 중 100만원 이하인 소규모 행사는 대관승인 문서 또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의 대관승인으로 확인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취소는 본 규정 제15조 규정에 적용한다.

② 기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입장 또는 사용의 제한) ①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그 밖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29조(대관 승인의 거절 및 취소) 대관 신청·승인된 행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대관승인을 거절 하거나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 구 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가 불가피하게 개최될 때
2.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 사용, 이용자서약서 내용 불이행, 무단 양도, 사용권 전매 등 적발될 경우
3. 사용자의 안전대책수립 등 승인절차 상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이용료를 기일(승인일로부터 3일이내)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행사로서 대관 사용자가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대관신청 내용 또는 승인 조건을 달리하여 사용이 예측되는 경우
8. 대관승인을 받은 후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예약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10. 정기대관에 신청 후, 승인 허가 완료 후 취소를 요구 할 경우 (*취소 규정에 준하여 실시) 및 신청 접수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당초 승인내용과 다르게 중대 사항을 변경하여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11. 기타 공공체육시설 내에서의 안전관리상 현저히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대관 사용중지) 대관신청·승인된 행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시설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시설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대관 승인 후 신청접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관사용자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4. 대관사용자가 시설 사용목적외에 임의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5. 대관사용자가 이행확약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각종 이용주민의 민원 등으로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1조(사용자 안전 및 질서유지) ① 대관사용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반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관행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한다.

② 대관사용자는 관계기관에 안전관리(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령이 정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제반 행정사항은 대관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행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④ 이용자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긴급사항 발생 시 대관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긴급조치를 하게하고 처리비용은 이용료 정산시 반영할 수 있다.

⑤ 대관 행사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관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⑥ 대관 사용자는 행사차량 통제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질서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자 고지의 의무)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영우 사용신청을 하기 전 시설관리자와 협의 후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 65세이상의 고령자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

나. 평소 지병, 질환이 있는 자

다.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② 사용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보험혜택 및 각종 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 금지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에 신고한다.

② 그 밖에 금지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4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통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자

2. 위험물 소지자나 음주자 등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4. 시설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영업 상행위를 하는 자

5. 타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5조(광고 및 홍보물 사용) ① 대관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 등 대관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관사용자는 대관시설물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 할 경우 지정하는 장소 외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 할 수 없다.

③ 대관시설물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얻고 중계 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대관 심의 이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사 중 판촉, 이벤트, 다과회, 리셉션 등을 개최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보험 가입 규정) 대관사용자는 행사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가입증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37조(시설설치 사용) ① 대관사용자는 대관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옥외 시설물이 대관 행사 후 현저하게 손상 된 경우 대관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관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 처리하고 이용료를 정산 후 해당 비용을 청구한다.

④ 대관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시설의 정리) ① 대관사용자는 대관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설치한 시설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사용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과 행사 객 편의를 위한 별도의 주차 안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관행사 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부담해야 한다.

③ 대관사용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실시하는 준비, 철거 작업 시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제40조(양도 및 전매금지 등) ①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전대할 수 없다.

②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행한 확약 조치에 대해 대관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대관사용 중 대관 장소에 설치, 보관중인 물품, 장비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대관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집회, 공연 등에 관한 신고, 승인 등 일체의 법정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대관 사용자는 대관사용 승인을 받은 시설의 유지관리와 원만한 사용을 위하여 대관 신청서에서 확약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사용자 사고시 보상 및 배상) ① 시설물 관리상 과실, 강습 중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용자의 사고발생 시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에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사용자는 차후 병력과 관련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시설물의 준수사항, 안전수칙 위반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42조(프로그램) 체육시설내 프로그램은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구분	프로그램	강습시간	정원	강습요일	수강료(원)	장소
축구 (풋살) 교실	단체강습(그룹지도)	60분 ~ 90분	20명 이내	주1회 ~ 주3회	33,000/주1회 55,000/주2회 99,000/분기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개인강습	60분 ~ 90분	1인당	주1회 ~ 주6회	28,000~ 250,000	
테니스 교실	단체강습(그룹지도)	30분 내외	소그룹 (기초)	평일(주2 ~ 4회)	100~150,000	테니스장 강습전용 지정코트
	개인강습	20분 내외	1인당	평일(주2 ~ 4회)	120~200,000	
				주말(주2 ~ 3회)	150~220,000	
특강 교실	수시모집	60분 ~ 90분	00명	주1회 ~ 주6회	28,000~ 250,000	별도편성
	단기특강		00명			
진흥단체 교실사업	어린이 축구교실	년중	00명	주2 ~ 3회	무료	풋살장
	생활체육 정구교실	반기 2회	00명	주2 ~ 3회	무료	정구장

1. 상기 정규프로그램 외에 운영상황에 따라 개설 월별조정 운영한다.
2. 기상우천 등 천재 지변으로 인한 강습 결강 시 이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다른 날자로 보장 실시 한다.(기타 공휴일, 개인사유로 인한 불참시 보장하지 않는다.)

제43조(프로그램 관리) 체육시설내의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 사업은 「광진 체육시설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외 운영사항은 공단 체육시설 이용내규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4장 이용료 등 관리

제44조(이용료의 징수) ①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되, 이용료의 금액은 관련조례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이용료 기준) ①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되, 이용료의 금액은 관련조례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46조(이용료 납부방법 등) ① 모든 시설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 등 “이용료”는 시설 사용 개시 전 사용허가서의 지정기한까지 이용료 추산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기안 내 미납 시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부과 징수의 주야시간, 동,하절기 시간 적용과 이용자 대상은 조례 제8조 등 별표1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단, 대관이용료는 기본 사용료에 부속 사용료를 합산하여 총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부과된 이용료는 배정 완료 또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액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단체사용의 1개월분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수시 대관접수 등 중도신청자의 경우와 프로그램 등 강습료 납부는 24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운동장 이용료의 경우 공원 및 녹지관리청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흥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이용료를 받고 별지 서식에 따른 수입금 납입 명세서를 작성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거가된 내용대로 시설을 사용한 후 사용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관시설 사용자의 확인서 발급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대관시설 사용일 개시 전 :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2. 대관시설 사용일 완료 후 : 체육시설 사용확인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3. 대관시설 사용료 납부 확인 계산서 : 세금계산서(예약 신청시, 발행요청시 3일 이내 발급)
4. 기타 이외 사항은 공단 체육시설 운영내규에 준하여 적용한다.

⑥ 이용료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 발급은 실 사용자 및 단체에 전자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료의 대체 납부 시에는 사용 신청자로 발급한다.

제47조(이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사용료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에 의거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50퍼센트
3. 체육 진흥을 위해서 국가나 서울특별시 또는 광진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 등의 체육행사 : 전액 면제 (후원을 받는 행사는 50퍼센트)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30 퍼센트 (개정 2023.01.19.)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0 퍼센트
6.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가 주최하는 체육행사 : 50퍼센트
7. 공익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 50퍼센트 이내
8. (삭제 2023.01.19.)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진구이며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 만18세 이하 자녀 2명 가구(30퍼센트), 만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 (50퍼센트) (신설 2023.01.19.)
10.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관한 조례」 제3조 및 9조에 따른 해당 카드 소지 이용자의 강좌 할인 5퍼센트 (신설 2023.01.19.)

③ 상기 ②항외에 전용 사용에 대관에 관한 감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장 시설의 대관사용시,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 금액의 50% 감면, 풋살장 대관 사용시는 청소년 30%, 단, 어린이는 무료로 한다.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 원 비율이 50%이상일 때 적용)
 2. 다목적구장은 풋살장 이용료에 준하되, 족구장으로 이용시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3. 테니스장, 정구장의 전용 사용시 단체에 대하여 10% 또는 20%를 감면한다.
 4. 기본사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에도 부대시설사용료 등 실 사용요금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시설대관 전용사용 감면적용 사용자, 부속시설 사용료와 강습료 중 개인레슨, 일부 특화강좌의 경우는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제1항의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8조(이용료 반환) ① 대관이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대관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

1. 공단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재난 등 이에 준하는 어쩔수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부 반환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3. 공단의 사정으로 정지된 경기 및 행사 중단될 때 : 정지기간 만큼 연장 또는 전부 반환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취소 신청일 기준 해당하는 비율을 공제 후 환불한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전액 환불한다. <개정 2022.08.12>

가. 사용일 7일전 또는 예약 당일 취소의 경우 : 이용일 전액 반환

나. 사용일 6일~3일전 취소의 경우 :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일 2일 ~ 1일전 취소의 경우 : 이용료 100분의 70 반환

라.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 환불불가

③ 강습프로그램 수강료의 경우 강좌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을 환불 (수수료제외)하고, 강좌 개시일 이후에는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취소일까지의 일할을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공제한 후 환불한다.

④ 사용자 귀책사유로 대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납부이용료 중 기본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테니스장 단체전용 사용의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천재지변 등에 따라 대관이 불가할 때에는 미사용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제1항의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환불 요청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고, 공단의 소정양식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이용료를 송금한 회원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통장계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관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장 보 칙

제49조(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규정 위반시 책임) ①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위반자가 책임지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① 법적분쟁 발생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단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약관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2. 04. 25.>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08. 12.>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01. 19.>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중랑천파크 골프장 체육시설 운영 내규

제 정 2022.09.01.

개 정 2023.08.0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중랑천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이하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외하고는 본 내규를 적용한다.

②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해당시설물을 체육산업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부대설치 등 부수행위를 포함한다.
- “이용자”라 함은 수탁자가 정한 소정의 신청절차를 이행한 후 이용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납부하고 해당시설물 이용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이용료”란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목표)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의 운영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 안정성 및 체육·문화의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한다.
- 고객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와 자연친화적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의 장을 마련한다.
-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과 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영효율 증진을 제고한다.

제5조(적용의 범위)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요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연습장
- 기타체육시설 :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제6조(시설 운영시간 등) ① 파크골프장 운영시간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기타체육시설은 연중 제한 없이 개방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시 설 명	이 용 시 간		비 고
파크골프장	1부	08:00 ~ 12:00	매주 월요일 및 추석연휴 휴장
	2부	14:00 ~ 18:00	

②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11월(8개월)로 제한한다.

③ 기타, 광진구청이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설관리 등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 근무시간을 공단 복무내규상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 시, 다음 날 휴무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사정 또는 부득이한 경우 조정하여 휴무 또는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설개방 및 이용)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자에게 공평한 이용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보호, 안전상의 이유 등 체육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 장 파크골프장 운영

제9조(운영기간 및 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혹서기등 계절별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월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4~6월 : 1부 08:00~12:00, 2부 14:00~18:00
2. 7~9월 : 1부 07:00~11:00, 2부 15:00~19:00
3. 10~11월 : 1부 08:00~12:00, 2부 13:00~17:00

② 제1항의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및 추석 연휴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임시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 ‘천재지변’ 으로 인한 세부 휴관 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폭우·폭설로 인한 중량천 차단기 발동 시
2. 강수량 시간당 15mm 이상 예상될 시
3. 적설량 20cm 이상 예상될 시
4.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시
5. 중량천 차단기 발동 시 등

제11조(이용허가) ① 파크골프장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파크골프장 예약홈페이지

에서 해당일 이용을 사전에 예약신청하여야 한다.

② 1일 예약가능 팀은 다음 표와 같으며 1팀당 최소이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파크골프장 이용이 가능하다.

시 설 명	이용 시간		예약가능팀	팀당 최소이용인원	팀당 최대이용인원	최대수용인원
파크골프장	1부	08:00 ~ 12:00	9개팀	3명이상	4명	36명
	2부	14:00 ~ 18:00	9개팀	3명이상	4명	36명

③ 1일 예약가능시간은 1부 또는 2부 중 1타임만 예약할 수 있다. (일일 1~2부 중복 예약 불가)

제12조(이용허가 순위) 2인 이상이 시설물 사용을 위해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1. 국가, 서울시 또는 광진구의 공공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경기.행사

제13조(이용신청 및 절차) ① 이용신청은 사용일 전월 15일 온라인 이용예약시스템내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 ② 누구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과 같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용일정은 온라인 이용예약시스템을 공지하되, 필요시 다른 매체에 공지할 수 있다.
- ④ 사용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이용예약시스템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받았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적용한다.

- ②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64조에 의거하여,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회원만 이용자 자격이 유지됨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들은 회원가입 후 매 2년마다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이용자 재동의)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진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를 적용한다.

제16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통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자
2. 위험물소지자나 음주자 등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4. 시설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영업 상행위를 하는 자
5. 타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7조(양도 및 전매금지 등)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이용자 사고시 보상 및 배상) ① 파크골프장 시설물 관리상 과실, 운영시간 중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발생 시 공단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이에 보상하여야 한다. 단, 기타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사소송 업무 등은 제외한다.

②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이용자는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 시설물의 준수사항, 안전수칙 위반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9조(기타체육시설 관리) ① 공단은 기타 체육시설의 고객관리(현장민원 등) 및 100만원미만의 경미한 시설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만 관리한다.

② 기타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사소송업무는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대응한다.

제 3 장 이용료 등 관리

제20조(이용료의 징수)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되, 이용료의 금액은 관련조례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요금부과 : 팀(4명)대표자 1인에게 부과
2. 이 용 료 : 1일(1, 2부 운영) 1부 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이용인원 : 4명(3명 이상 예약신청가능)

제21조(이용료 납부방법 등) 온라인 이용예약시스템 내에서 팀대표자 1인이 예약 시이용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이 완료된다.

제22조(이용료 감면) 이용료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3조(이용료 반환) 이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공단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재난 등 이에 준하는 어쩔수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부 반환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3.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 반환
4.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이후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반환금액 없음

제 4 장 보 칩

제24조(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진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내규 위반시 책임) ① 내규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위반자가 책임지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① 법적분쟁 발생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단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칩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내규는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약관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칩

<개정 2023. 8. 4.>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